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1)}

Legal Deposit and Preservation of Digital Materials in Various Countries

서혜란 (Hye-Ran Suh)^{**2)}

초록

법정 납본 제도는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이라는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 도구이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인쇄자료에 기반을 둔 납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납본제도의 디지털자료 관련 최근 동향을 조사하였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설립을 앞두고 디지털자료의 수집을 위한 법정 납본 제도의 확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ABSTRACT

Legal deposit system is an essential tool for a national library to ensure the preservation and access to a nation's intellectual heritage over time. Substantial amounts of digital materials of national cultural value are already being published. There is a global trend towards extending legal deposit to cover digital materials in order to maintain comprehensive national archives. This paper gives a progress report of s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ose legal deposit laws have already updated or are under revision. Some strategies are suggested for the digital collection building of the Korean National Digital Library which will open in 2008.

키워드: 디지털자료, 납본, 납본법, 보존, 국가도서관, digital materials, legal deposit, legal deposit law, preservation, national library

1 서론

국가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정보자료를 완벽하게 수집하고 기록하고 보존하여 당대 및 후대의 이용자들에게 이용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세계 각 국의 국가도서관들은 자국의 국가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데 유용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정 납본 제도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정보자료의 주종이 되어왔던 인쇄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납본 제도는 1990년대 이후 디지털자료가 급증하면서 포괄적 국가문헌의 수집도구로서의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국가도서관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디지털매체의 수집과

* 이 연구는 2001년도 신라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한 것임.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hrsuh@silla.ac.kr)

보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사이 수많은 주요 정보들이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혹자는 이런 현상을 “문화적 재앙”(Waters & Garrett 1996) 또는 “디지털 암흑시대”(Kuny & Cleveland 1998)라는 용어를 쓰면서 경고하기도 하였다.

물론 도서관계가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속수무책인 것은 아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도전해 오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다.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관한 중요한 지침과 성명들이 발표되었고, 많은 국가에서 자국의 납본 관련 법률을 디지털자료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다.

소위 인터넷강국이라고 지칭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자료들이 대량으로 생산·유통·이용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 부분이 보존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그 모든 정보들이 국가문헌으로서 수집되고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의 문화유산과 지식유산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소홀히 볼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2008년까지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설립할 계획을 확정된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법률적·기술적 기반을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도서관이 디지털환경에서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지를 납본제도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러 나라 납본제도의 디지털자료 관련 최근 동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의 초점을 제도적 측면에 두었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그 난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해답을 찾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치게 될 것이다.

2 디지털자료

2.1 디지털자료의 개념과 유형

디지털자료란 정보를 디지털로 인코딩하고 컴퓨터를 통해 접속·인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배포하는 것이다. 디지털자료가 전통적인 종이기반 인쇄자료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지만, 도서관자료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전자출판물은 디지털자료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이지만 많은 문헌에서 디지털자료와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기도 한다.

디지털자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오프라인자료와 온라인자료로 나눌 수 있다. 오프라인자료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매체에 고정된 것으로 패키지형 전자출판물이라고도 한다. 오프라인자료는 복본을 제작하여 배포한다는 점에서 인쇄자료와 유사하다. CD-ROM, 컴퓨터디스켓, DVD 등이 대표적이다. 온라인자료는 인터넷, PC통신 등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되고 이용되는 것이므로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물리적 형태가 없다. 온라인자료는 호스트컴퓨터(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이용자가 통신네트워크를 통해서 접

속함으로써 배포되므로 네트워크형 전자출판물이라고도 한다.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각종 웹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온라인자료는 다시 정적(static) 온라인자료와 동적(dynamic) 온라인자료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파일의 내용이 일정하게 고정된 것인데 비해 후자는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속에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갖는다.

디지털자료는 처음부터 디지털형태로만 만들어진 자료와 다른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던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한 자료로 구분할 수도 있다.

2.2 디지털자료의 법정 납본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2.2.1 납본 대상자료의 범위 설정

오프라인자료는 매체의 물리적 취약성과 불안정성, 그리고 기술의존성 때문에 보존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형태를 가진 매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전통적인 납본 제도에 편입되어 인쇄자료와 거의 비슷하게 처리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자료, 특히 동적 온라인자료를 납본 받으려면 훨씬 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기술발전의 추이를 고려해서 법정 납본 대상자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 문제와는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디지털자료를 납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전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 자국의 문화유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회복할 수 없게 될(Seadle 2001, 299) 가능성이 있다. 후자의 입장을 취할 경우 납본에 따르는 제도적, 기술적 뒷받침이 부족하게 되어 자칫 법이 형식화되고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納本制度調査會 1999, 9) 우려가 있다.

납본 대상자료 설정에 있어서 자료의 국적판별 기준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인쇄자료의 국적은 그 저작이 출판된 위치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결정하기 쉽고 논쟁거리가 없지만, 이 문제를 온라인자료에 적용시키려면 국적판별의 기준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진다. 디지털자료 납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적판별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디지털자료의 국적판별 기준으로 자료나 메타데이터에 표시된 국가나 지역, 생산(출판)기관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기관의 위치, 제일저자의 주소, 저자의 국적, 출판물의 네트워크상 주요 위치의 순서로 적용할 것이 제안한 바 있다(Mackenzie Owen and Walle 1996, 22). 하이퍼링크된 자료의 수집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도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한편 동일한 출판물이 서로 다른 매체에 수록되어 출판될 경우 납본 대상자료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매체가 납본의 대상이 되는가? 그 가운데 특정 매체에만 납본의무를 부과하는가?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어떤 종류의 매체를 납본 받을 것인가? 예컨대 미국의회도서관이나 호주국가도서관에서는 디지털매체보다 인쇄매체를 선호함을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호주국립도서관은 보존상의 이점 때문에 오프라인매체보다는 온라인매체를 선호한다(U.S. Copyright Office 2002a;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2002).

2.2.2 납본의 방법과 절차

납본 대상에 온라인자료를 포함시킬 경우,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국가문헌에 대해 납본의무를 확대한다면 납본의무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인터넷상의 웹정보는 이제 ‘출판’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직접 자료를 웹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국가문헌의 포괄적인 수집을 목표로 하는 국가도서관으로서는 거의 악몽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 모든 당사자에게 납본의무를 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또 만약 그들 대부분이 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다면, 도서관으로서는 그 자료들을 처리하고 이용시키기 위해 엄청난 인력과 재정과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가 국가문헌으로서 장기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자료의 납본에서는 전통적 납본에서의 망라성이라는 개념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문제가 대두된다. 온라인자료의 수집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호주의 PANDORA(Preserving and Accessing Networked Documentary Resources in Australia) 프로젝트처럼 수많은 대상 자료 중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일부를 선정한 후 수집하는 선택적 수집이다. 다른 하나는 스웨덴의 Kulturarw3처럼 웹로봇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망라적 자동수집을 하는 방법이다. 어느 쪽이 경제성이 있는가는 각 국의 디지털환경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동적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정보가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데이터와 정보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변한다. 이 경우 전통적인 납본법에서 사용되는 ‘판’의 개념을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한 가지 해결책은 국가도서관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해당 자료를 수집하는 ‘스냅샷(snapshot)’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전통적 납본 제도에서는 보통 납본의무자가 자료를 도서관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납본이 이루어지는데, 오프라인자료인 경우에는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자료인 경우에는 새로운 수집방법과 절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온라인자료의 법정 납본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시스템을 적용하든 기본적으로 국가도서관이 저작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임의의 시점에서 온라인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2.3 납본자료의 보존과 이용제공

어떤 도서관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국가도서관은 국가의 출판유산을 포괄적으로 보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에게 국가문헌에 대한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권을 제공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사실은 베른협약에 의해 도서관이 저작권법 상 예외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전통적 인쇄출판환경에서 국가도서관은 소장 자료의 보존을 위해 일반적으로 저작권소유자의 허락 없이 손상되거나 손상되기 쉬운 자료, 또는 분실한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장받아 왔다. 또한 연구 등 공정이용 목적을 가진 이용자에게는 저작권소유자의 허락 없이 소장 자료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이용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디지털자료인 경우에는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디지털자료는 매체의 불안정성과 기술의존성 때문에 저작권소유자의 복제권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보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디지털자료는 엄밀한 기술적 의미에서의 복제를 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이용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복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원격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의 변조나 불법 이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저작권소유자의 재산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디지털자료를 둘러싸고 도서관계의 입장과 출판계의 입장은 어느 정도 갈등관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다만 디지털자료의 장기 보존 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에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와 IPA(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가 합의·채택한 문건(IFLA & IPA 200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출판계가 출판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국가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자료의 이용제공 측면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이 문제에 대한 도서관계의 입장은 IFLA가 채택 발표한 일련의 문서들(IFLA 2000; IFLA 2002)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즉 디지털자료에 대해서도 인쇄자료와 마찬가지로 공익적이고 교육과 연구 같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경우 무료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상의 예외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보편적이고 공평한 정보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한 접근 문제의 해결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자료의 이용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해결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납본법도 저작권소유자의 이익과 평등한 정보이용권한을 가진 이용자의 이익간에 균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Larivière 2000).

이용자의 보편적 이용요구와 저작권소유자의 권리 사이에 필요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도서관은 첫째, 납본법이나 저작권법에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이용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외 사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원격에서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자료를 불법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셋째, 출판사, 이용자, 국가도서관이 협력해서 국가도서관에 납본된 디지털자료의 이용제공에 관련된 상호합의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3 주요국가의 디지털자료 납본 제도

3.1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은 대부분의 국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문헌의 수집·보존·공중이용 제공 등 기능 수행을 하는데 법정 납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총 4,385,873책 중 70.7%에 이르는 3,100,628책이 납본에 의해 수집되었다. 상대적으로 구입(7.8%), 기증(11.8%), 교환(7.7%), 자체생산(2.0%)에 의해 수집된 장서의 비율은 낮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납본이 법률로 명문화된 것은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법률 제

1424호) 제12조(도서관자료의 제공과 납본)에서 도서와 기타 간행물을 2-3부 납본하도록 규정한 것이 처음이다. 1987년에 법률 제3972호로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1988년에 개정된 동 법 시행령 제19조(제공 및 납본자료 등)에 의해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전산화자료 중 테이프 및 디스크’가 납본 대상자료에 포함되게 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19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법률 제4746호) 제2장(국립중앙도서관) 제17조(자료의 제출)에 의해 국내에서 발행 또는 제작되는 자료를 납본 받는다. 납본 대상자료는 위 조항과 동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인쇄출판물(도서,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음반, 비디오물, 카세트테이프, 슬라이드), 전산화자료(DVD, CD-ROM, CD-I, CD-G 등), 마이크로물 등이다.³⁾ 즉 1988년부터 디지털자료 중 오프라인자료는 전산화자료라는 이름으로 법정 납본대상이 되고 있지만 온라인자료는 아직 납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법제 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은 2001년도에 총 478,522 점을 납본 받았는데, 그 가운데 디지털자료는 CD-ROM 4,802점과 DVD 1,568점 등이다(국립중앙도서관, 2002). 납본을 받은 디지털자료는 시청각자료와 함께 비도서자료로 분류되어 디지털자료실에서 관리·이용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2002년도 자료수집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하면 국가도서관의 대표적 수집방법인 국내자료의 납본 수집을 강화하며, 특히 DVD, CD-ROM 등 뉴미디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납본을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자료의 급부상과 함께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자료로의 납본대상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온라인저작물 수집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해외 선진국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이를 기준으로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수집하는 수집자료관리(웹로봇 포함), 수집된 자료를 검증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요청하고 설정하는 접수관리, 선정된 저작물의 목록을 더블링크아로 작성하는 목록관리, 보존을 위한 레이블을 생성하는 보존관리, 접수·저장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검색기능 등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온라인 출판물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수집하며, 향후 DOI, 저작권 등록공시제도, 보상금 지급기준, 저작물 사용료 등의 여건이 조성된 후 민간 온라인 저작물

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1994년 제정, 법률 제4746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연속간행물·음반·비디오물·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없이 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은 자료제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자료제출의 절차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시행령(1994년 제정 대통령령 제14399호)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①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도, 2. 슬라이드, 3. 전산화자료 중 테이프 및 디스크, 4. 마이크로 형태물 중 창작된 자료

까지 수집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3.2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1948년에 제정된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4조 및 25조에 의해 납본을 받는다. 1949년에 개정된 납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서, 소책자,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음반, 마이크로물 등 납본 대상 자료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기관들은 출판과 동시에 법정 부수(30-50부)만큼을, 민간출판물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 부를 납본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디지털자료의 등장과 보급에 따라 납본 대상 자료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7년에 납본제도 개혁 추진을 위해 국립국회도서관장의 자문기관으로 납본제도 조사회가 설치되었고, 조사회는 보고서(納本制度調査會 1998; 納本制度調査會 1999)를 통해 (1) 오프라인자료는 납본 제도에 편입시켜 그 유형 및 내용을 불문하고 망라적으로 납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2) 오프라인자료를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자, 발행자, 이용자 각각의 편익의 균형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며, (3) 온라인자료는 당분간 납본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집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1999년 4월, 납본제도조사회는 납본제도심의회로 개편되었다. 심의회는 납본제도 개선에 관한 국립국회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해 일련의 보고서(納本制度審議會 1999; 納本制度審議會 2000)를 제출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프라인자료를 새롭게 납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00년 4월 7일에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른 관련 규정들도 정비되었다. 법 개정 이후 1년 동안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하게 된 오프라인자료가 대폭 증가함으로써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도서 및 연속간행물 장서의 증가율이 1-3%인데 비해서 오프라인자료의 장서 증가율은 CD-ROM 등의 광디스크 47%, DVD 등의 비디오디스크 26%로 각각 급증하였다(國立國會圖書館 2002).

국립국회도서관은 납본 받은 디지털자료 중 영상자료는 2001년 1월부터, 그 밖의 자료는 2001년 7월부터 이용자들에게 이용시키기 시작했다. 이용 방식은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서 발행자나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열람은 독립형 단말에서 가능하며, 관내 LAN 등 네트워크를 이용한 열람을 제공하려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복제는 종이 프린트아웃 방식으로 한정해서 발행자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법정납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온라인자료를 납본 대상 자료에 추가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02년 3월에 국립국회도서관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문을 받은 심의회는 전문가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04년 안에 보고서를 발표할 것을 목표로 연구 중에 있다. 한편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2002년 10월부터 인터넷자원의 선택적 축적실험 사업인 WARP(Web ARchiving

Project)(<http://warp.ndl.go.jp/>)와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해서 링크시키는 Dnavi(Database Navigation Service)(<http://dnavi.ndl.go.jp/>)를 수행하고 있다.

3.3 영국

영국에서는 1911년 저작권법 제15조에 의해 British Library(BL)가 국내에서 출판된 인쇄 자료를 출판 1개월 내에 한 부씩 납본 받는다. 그 외에 5개 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cotland, National Library of Wales, Bodleian Library,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Trinity College Dublin)은 자관의 장서로 필요한 자료의 납본을 출판사에 요구할 수 있고, 출판사들은 해당 자료를 납본할 의무가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영국에서는 인쇄자료로 한정된 법정 납본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1996년 1월, 영국도서관은 법정 납본을 모든 형태의 비인쇄자료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British Library 1996). 여기서 비인쇄자료의 범주에 들어가는 자료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예, 전자저널), 웹사이트, 유형의 전자출판물(예, CD-ROM, DVD) 및 마이크로물이다. 이 제안에 대해 영국 정부는 1997년 2월 디지털자료의 법정 납본에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구하는 문건을 발간했다(U.K. Dept. of National Heritage, *et al.* 1997). 이듬해 영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반응을 요약 출판하고(U.K. Dept. of Culture, Media and Sport 1998), Kenny 경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러 당사자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인쇄자료에 대한 법정 납본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였다. Kenny 위원회의 보고서는 1998년 12월에 발표되었다(Working Party on Legal Deposit 1998). 완전한 국가출판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법정 납본의 대상을 온라인자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출판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의 완전한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임시조치로서 비인쇄출판물의 자발적 납본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출판단체들과 납본도서관들이 배서한 자발적 납본 실행규약이 2001년 1월 4일에 발효되었다(Working Party on Legal Deposit 1999).

이 규약에서 자발적 납본의 대상으로 삼는 출판물은 마이크로필름과 오프라인자료이며 온라인자료는 아직은 해결되기 어려운 수집과 보존 문제들 때문에 배제되었다. 오프라인자료는 영국 내에서 12 부가 판매되고 나면 모든 지원 소프트웨어 및 매뉴얼과 함께 영국도서관에 한 부가 납본된다. 다른 납본도서관들은 인쇄자료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료에 대해 납본을 요청할 수 있다. 출판사는 납본을 할 때 도서관에게 이용제공 수준(소장 도서관 내 독립형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한 단일 사용자 접속, 소장 도서관의 인트라넷을 통한 지정된 터미널에서의 단일 사용자 접속, 납본도서관간 보안 네트워크를 통한 단일 사용자 접속)을 지정할 수 있다. 이용자의 다운로드링은 허용되지 않으며 프린트 아웃은 제한된다. 도서관이 보존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출판물의 아이덴티티와 무결성(integrity) 보존을 조건으로 허용된다.

결국 현재 영국의 납본제도는 인쇄자료의 법정 납본과 오프라인자료의 자발적 납본으로 요약된다. 전자도서(e-book)는 2000년 1월부터 법정 납본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자료와 웹사이트는 자발적 납본 규약의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CD-ROM같은 오프라인자료도 약 25%는 납본도서관에 입수되지 않은 채 사라져버리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영국의 납본도서관과 출판단체들은 정부와 협력해서 JCVD(Joint Committee on Voluntary Deposit)를 구성하고 수년째 모든 디지털자료의 법정 납본을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British Library [2002]).

BL은 2001년 5월부터 6개월간 'Domain.uk'라는 웹아카이빙 파일럿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역사적 또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영국 웹사이트 100개를 대상으로 3주 간격으로 자동수집소프트웨어 whack을 사용해서 수집한 결과 약 2만 페이지가 수집되었다. 이와 같은 선택적 수집 프로젝트는 향후 열람기능을 포함해 대상을 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서 모든 .uk 도메인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스냅샷을 수집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 계획의 궁극적 목적 중 하나는 아카이빙을 위한 스냅샷을 허용하도록 법정 납본제도를 개정하는 것이다.

3.4 프랑스

1537년에 세계 최초의 납본을 실시함으로써 납본제도의 중주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는 현재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BnF)가 1992년 6월 20일에 제정되고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납본법에 의해 납본을 받고 있다. 이 법 제1조에 의해 기존의 인쇄, 그래픽, 사진, 시청각자료 외에 컴퓨터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시스템 및 기타 인공지능 저작물의 출판자는 그것을 컴퓨터 가독 매체에 담아 출판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즉시 납본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자료는 물리적 매체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 납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웹 출판물이 급증하고 거기에 담긴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BnF는 온라인자료의 적극적 수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BnF는 1999년에 온라인자료 수집을 위해 25개 웹사이트로부터 자동수집 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이 실험에서 수집대상으로 삼은 것은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루어진 학술지와 단행본이다. 2001년에는 음악, 비디오, 멀티미디어가 수록된 16,10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했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후 BnF는 2개의 다른 로봇으로 새로운 타당성 연구를 계획하였다. 하나는 2002년 봄에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에 관한 사이트 300여 개를 선택해서 매주 당 약 30Gb를 수집하는 것이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2002년 6월부터 .fr 도메인을 자동수집 하는 것이다.

한편 2001년 6월에 제출된 납본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모든 프랑스 웹페이지를 공식적으로 수집·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BnF와 Ina(National Audio-visual Institute)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개인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모든 프랑스의 웹을 자동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즉 프랑스 영토상에 물리적으로 축적된 웹페이지만을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프랑스 시민들이 소유한 웹페이지들로 구성할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들도 아직 남아있다. 특히 동영상을 담고 있는 사이트와 기타 동적 사이트들의 축적을 실행하기에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3.5 독일

독일의 국가도서관 Die Deutsche Bibliothek(DDB)는 독일의 국가기록관이자 국가서지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능의 수행은 법률상의 의무납본 규정에 의해 담보된다. 현재는 전통적 인쇄출판물은 물론 마이크로물, 시청각자료 및 오프라인자료가 법정 납본대상이다.

아직은 법정 납본대상이 아닌 온라인자료를 납본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DDB 측과 5개 독일 출판사 측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자납본도서관 태스크포스는 1998년부터 DDB가 네트워크로 배포되는 온라인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실험하고 토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자료를 납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2000년 3월에 온라인자료의 수집, 처리절차, 저작권 처리방법과 이용문제를 포함한 납본 지침이 태스크포스의 보고서로 제출되었다. DDB는 2001년 현재 온라인자료의 자동수집시스템을 개발중이며, 납본된 온라인자료의 이용을 규정하는 표준계약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3.6 네덜란드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네덜란드에는 납본관련 법규가 없다. 네덜란드의 국가도서관인 Koninklijke Bibliotheek(KB)는 1974년부터 자발적 납본을 받기 시작하였고, 1983년부터는 네덜란드출판협회와의 협정에 의해 인쇄자료의 자발적 납본을 받고 있다. 1995년에 오프라인자료를 납본 받기 시작한 KB는 1998년부터는 출판사와의 협정에 의해 온라인자료도 자발적 납본을 받는다.

KB는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관련해서 선정기준, 메타데이터, 시스템설계, 장기보존 등 여러 측면의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활동은 유럽지역의 8개 국가도서관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이 참여한 다국적 프로젝트인 NEDLIB(Networked European Deposit Library)(<http://www.kb.nl/nedlib/>)를 이끄는 것이었다.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지속된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OAIS참조모형(Reference Model for an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에 기반을 두고 있는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유럽지역의 합의된 모델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7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법정 납본은 1989년 6월에 제정되어 1990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납본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 이 법은 주의 깊은 용어 선택과 개념 정의를 통해 읽거나, 듣거나, 방송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노르웨이 국가도서관인 Nasjonalbiblioteket(Nb)이 기술적으로 처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납본 자료의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인쇄자료는 물론 시청각자료, 방송자료와 오프라인자료 및 온라인자료, 그리고 미래의 새로운 디지털 포맷까지 납본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자료 중 동적 디지털자료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같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노르웨이는 Nordic Web Archive(<http://nwa.nb.no/>) 프로젝트를 통해 웹자료의 자동수집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3.8 핀란드

핀란드의 현행 납본법은 1980년에 제정된 것으로 핀란드 내에서 인쇄된 모든 출판물과 핀란드 내에서 제작된 모든 시청각자료를 납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납본의무를 가지는 자료의 출판사나 제작자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2부 또는 6부를 납본해야 한다. 핀란드의 국가도서관인 Helsingin yliopiston kirjasto - Suomen kansalliskirjasto(헬싱키대학도서관)은 납본된 모든 자료 1부씩을 장서에 편입시키고, 나머지 1부 내지 5부는 각각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다른 6개 납본도서관들에게 보내준다.

CD-ROM이나 온라인자료 같은 디지털자료는 아직 납본법에 의한 납본대상 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디지털 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을 인식한 핀란드 교육부는 납본법을 개정하여 납본 대상을 모든 디지털자료로 확대하기 위해 1997년도에 워킹그룹을 설립하였고, 여기서 제안된 개정안을 바탕으로 2003년 3월에 새로운 납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새 납본법에는 CD-ROM이나 DVD 같은 오프라인자료는 물론이고 온라인자료까지 납본 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다. 오프라인자료의 경우 게임이나 워드프로세싱 등 정보컨텐츠가 거의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납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본 방법은 인쇄물과 같으며, 납본된 오프라인자료는 인쇄자료와 마찬가지로 핀란드국가서지에 수록된다. 온라인자료는 자유접근 온라인자원과 접근제한 온라인자원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수집방법이 규정된다. 자유접근 온라인자원이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한 공개된 웹 정보를 의미한다. 이들 자료는 핀란드국가도서관 혹은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이 인터넷에서 직접 웹로봇을 사용하여 자동수집 할 것이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 중 중요한 것은 선별하여 인쇄자료와 마찬가지로 국가서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것이다. 반면에 전자도서,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 등 종류가 다양한 접근제한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납본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 납본 방법과 납본 후 도서관에서의 처리과정은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Helsinki University Library 2001; Hakala 1999).

핀란드 교육부는 '정보사회에서의 교육, 훈련 및 연구'라는 전략 프로그램의 일부로 도서관, 출판사 및 디지털 변환과 디지털 아카이빙, 인터넷 자동수집 전문기관들을 참여시킨 Eva 프로젝트(<http://www.lib.helsinki.fi/eva/english.html>)를 1997년부터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인터넷 상에 흩어져 있는 디지털자료를 수집, 등록, 보존하는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고 도서관에서의 장기보존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은 새 납본법안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9 스웨덴

스웨덴의 국가도서관인 Kungliga biblioteket, Sveriges nationalbibliotek(Kb)는 이미 17세기부터 납본법에 의해 모든 스웨덴의 인쇄 출판물을 수집, 기술, 보존하고 이용시켜 왔다. 1993년 납본법(1995년 개정)에서는 디지털자료 중 오프라인자료의 법정 납본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온라인자료는 납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많은 문헌들이 오직 디지털 형태로만 출판되고 그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스웨덴 문화유산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된 Kb는 1996년부터 kulturarw3 프로젝트(<http://www.kb.se/kw3/ENG/Default.htm>)를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출판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스웨덴의 디지털문헌을 수집, 보존하고 이용시키는 방법을 실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OMBINE이라는 웹 로봇을 사용한 자동수집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 다음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벌크수집 방법을 채택했다.

2000년부터 법정 납본 대상을 온라인자료로 확대하는 논의를 시작한 스웨덴 정부는 2002년 5월 8일 웹 아카이빙을 법제화하는 특별 법령을 선포하였다. 7월 1일부터 발효된 법에 의해 Kb는 인터넷상의 스웨덴 웹사이트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에게 이용시키는 것을 허가받았다(Arvidson 2002). 그 이전까지 Kb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집한 웹 자료를 이용자에게 이용시키지 않았었다.

3.10 덴마크

덴마크에 법정 납본 제도가 도입된 것은 1697년이다. 이후 납본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현행 납본법은 1997년에 제정되고 199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출판물의 저작권 납본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제작기법이나 매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덴마크에서 출판된 모든 저작을 법정 납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오프라인자료와 정적 온라인자료는 법정 납본 대상이다. 다만 일부 기술적 문제와 판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적 온라인자료는 아직 법에 포함되지 않았다(Dupont 1999).

납본법에 의해 유형의 출판물(도서 등 인쇄본, 마이크로물, 시청각자료, CD와 CD-ROM, 디스켓 등 디지털자료)의 납본의무자인 '출판용 최종본을 제작한 자'는 매년 두 차례(1월과 7월) 출판한 저작 2부를 국가도서관인 Det Kongelige Bibliotek(KB)에 보내야 한다. 온라인 자료('최종적이고 독립적인 단위로 간주되는 한정된 양의 정보'로 구성된 인터넷상의 모든 저작물)의 납본의무자인 '디지털 카피의 기술적 완성 책임을 가진 자'는 실제로 저작을 납본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데이터가 있는 단행본용, 메타데이터가 없는 단행본용, 정기간행물용으로 구별된 온라인 등록양식에 메타데이터를 입력하여 KB에 출판을 통고한다. KB는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여 서버에 저장한다. 납본의무자에게는 출판 통고를 받은 후와 수집 후 각각 전자우편을 통해 영수증을 보낸다. 네트워크 출판물 납본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KB가 개발한 납본등록시스템에 의해 수행된다. 이용자는 저작권법 때문에 납본된 온라인 자료를 지정된 도서관 열람실 내의 전용 컴퓨터에서만 보고 인쇄할 수 있다.

3.11 호주

호주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각각 납본 관련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적용되는 법정 납본 규정은 1968년도 저작권법 제201조이다. 이 규정에 따라 호주에서 출판된 모든 ‘도서관자료’의 발행자는 출판 1개월 이내에 한 부를 자신의 비용으로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NLA)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도서관자료’라는 개념은 인쇄물로만 제한된다. 따라서 디지털자료는 물론이고 시청각자료도 아직 연방법 차원에서는 법정 납본 대상이 아니다. 현재 NLA는 법정 납본 대상자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1966년에는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와 공동으로 정부가 1968년 납본관련법 개정을 위해 구성된 저작권법검토위원회에 납본법 확대에 대한 의견서(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and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1996)를 제출했고, 동 위원회는 1999년 2월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에 시청각자료와 디지털자료를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2001년 말부터 연방 납본 규정의 개정에 착수했는데 원하는 바대로 개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Gatenby 2002).

NLA는 비록 법규정의 지원은 없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데이터베이스, CD-ROM, 컴퓨터 디스크 등 오프라인자료를 출판사와의 협약(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2001a)을 통해 자발적 납본(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2002b)을 받고 있다. 이렇게 수집한 전자출판물은 도서관의 이용정책서(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2001b)에 근거해서 엄격히 제한된 이용만이 가능하다. 특히 1996년부터는 PANDORA 프로젝트(<http://pandora.nla.gov.au>)를 통해 호주의 온라인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제는 NLA의 중요한 장서개발활동으로 자리잡은 온라인자료 수집은 상세한 선택지침에 의거해서 호주 사회와 역사 연구에 가치가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 대상 온라인자료를 선정한 후 관련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 자체 개발한 자동수집 및 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수집한다. 2002년 현재 수집된 온라인 장서는 약 2,400건(단일 문헌, 웹사이트 일부, 웹사이트 전부)으로 여기에는 정적 자료 외에 동적 자료도 포함되며, 그 가운데 약 4은 정기적으로 재수집된다. 수집한 자료는 전부 국가서지와 온라인 목록에 수록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출판사의 상업적 이익이나 내용의 민감성 때문에 접속이 제한되는 소수를 제외하고 98%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접속이 가능하다(Gatenby 2002).

3.12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납본법은 1842년에 처음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1997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법정 납본의 대상을 시청각자료, 방송자료 및 디지털자료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범조문에 납본 대상 매체를 일일이 열거하거나 정의를 내리는 대신, ‘문헌(document)’과 ‘매체(medium)’라는 일반적 용어

를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와 해석을 내리고 특정 매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비교적 개정이 쉬운 시행령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이 법에서 ‘문헌’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글, 그림, 시각, 청각 및 기타 인지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려고 의도하는 모든 객체’로 정의한다. ‘매체’는 ‘차후에 읽거나 듣거나 볼 수 있도록 의도하여 정보를 기록하거나 전달하는 모든 수단’으로 해석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정된 납본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지만 그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는 인쇄자료, 시청각자료 및 CD-ROM 등 정적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을 시행하되 방송매체와 온라인자료와 웹사이트에 대한 납본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National Library of South Africa(NLSA)가 직면한 기술적 한계, 재정적 문제, 그리고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NLSA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첫째, 구체적인 전략계획과 사업계획을 세운 후 정부를 대상으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과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국가도서관들과 전문인력 훈련과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획득 등에 대한 협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셋째, NLSA 안에 개발 및 마케팅부서를 신설하고 적극적인 자금모금 노력을 하고 있다. 2002년에 Mellon Foundation으로부터 연구지원금을 받은 것은 그 성과 중 하나다. 이 기금은 디지털자료의 납본을 비롯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정 납본 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기술 하부구조에 대한 연구에 쓰이게 된다(Letshela & Lor 2002).

3.13 미국

미국에서 현행 납본제도의 법적 근거는 1976년에 제정되고 197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저작권법 제407조이다. 이 조항은 1989년 3월 1일에 개정되었는데, 그 결과 이날부터 미국 내에서 출판되는 저작권보호를 받는 모든 저작은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의무납본 대상이 되게 되었다. 즉 어떤 저작의 제작자가 저작권 등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납본 조건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작이 창작된 순간부터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출판된 저작은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납본되어야 한다. 의무납본 대상 저작의 판권소유자는 출판 3개월 내에 보통 2부를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에 납본해야 한다. 이렇게 납본된 저작은 저작권법 704조에 의해 Library of Congress(LC) 장서에 편입되거나 다른 도서관과의 교환에 사용된다(U.S. Copyright Office 2002b).

미국의 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해 아날로그자료이든 디지털자료이든 유형의 매체에 고정되지 않은 것, 즉 무형으로 배포되는 저작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쇄물, 사진, 영화(필름과 비디오테이프), 음반, 악보, 마이크로필름, 유형의 기계가독자료(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포함)는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자료는 제외된다. 온라인자료의 저작권 등록을 하려면 저작을 매체에 복제(컴퓨터 디스크 또는 프린트 아웃)해서 제출해야 한다(U.S. Copyright Office 1999). 온라인자료의 비중이 점

점 더 커지는 현실에서 이 규정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원래 1978년부터 저작권보호 대상이었으며, 실제로는 이미 1964년부터 프린트아웃, 펀치카드, 마그네틱테이프 형태로 저작권 등록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메인프레임 시대이던 1978년 당시 LC의 요청에 의해 기계가독형태로만 출판된 저작을 납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 후 PC가 대중화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늘어나자 LC는 기계가독형 장서 열람실을 설치하고 Copyright Office에게 기계가독형 저작의 의무납본 제외규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는 다시 1989년부터 납본 대상이 되었다. LC는 IIA(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 NFAIS(National Federation of Abstracting and Information Services), AAP(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와의 1년에 걸친 협상 뒤에 새로운 저작권협약을 맺고 1993년 9월 28일 처음으로 3종의 CD-ROM(Macmillan New Media의 *AIDS Compact Librar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PsycINFO*, John Wiley & Sons의 *CD-Calculus*)을 납본을 받았다. 또한 1999년 1월에는 UMI(University Microfilms Inc.)와 협약을 체결하고 UMI의 ProQuest Digital Dissertations를 1997년 이후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10만 건 이상의 학위논문과 앞으로 생산될 학위논문의 공식적 도서관 외부 보관소로 지정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만약 ProQuest가 데이터베이스 유지를 중단하면 LC가 학위논문의 디지털 카피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 열람실에 오는 이용자는 ProQuest Digital Dissertation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지만 LC를 통해 원격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는 없다. 2001년 6월 28일과 7월 2일에는 McGraw-Hill 출판사에서 최초로 e-book 2종(*The Hichhiker's Guide to the Wireless Web*과 *The Business Week Guide to the Best Business Schools*)을 납본한 바 있다.

한편 LC는 1993년부터 CNRI(Corporation for National Research Initiatives) 및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와 공동으로 디지털자료의 저작권 등록과 납본업무의 일관된 처리를 위해 CORDS(Copyright Office Electronic Registration, Recordation and Deposit System)(<http://www.loc.gov/copyright/cords/>)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LC는 CORDS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면서 2004년까지 전체 납본의 15%에 해당하는 약 10만 건의 디지털자료 납본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LC 역시 국가도서관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온라인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다. 2000년 3월부터는 MINERVA(Mapping the INternet Electronic Resources Virtual Archive)(<http://www.loc.gov/minerva/>)라는 웹 보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웹에 공개된 자료의 선정, 수집, 편목과 이용에 관련된 기술적 및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2000년 대통령선거와 9.11 테러 등 이벤트 중심으로 웹 아카이빙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컨텐츠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LC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억 달러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2000년 12월에 통과시켰고, 그에 따라 LC는 NDIIPP(National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servation

Program)(<http://www.digitalpreservation.gov/ndiipp/>)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00년에 발표된 LC의 디지털전략에 관한 보고서 (Committee on an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y for the Library of Congress, *et al.* 2000)의 건의에 따라 LC는 인터넷 상에 공개된 자료의 다운로드 권한을 가지도록 저작권법 407조를 개정할 것을 의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3.14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1985년에 제정된 국립도서관법과 1995년도의 국립도서관납본령에 의해 납본이 규정된다. 발행자는 출판 1주일 내에 자기 비용으로 신간도서 2부를 National Library of Canada(NLC)에 보낼 의무가 있다. 여기서 납본대상이 되는 도서관 물리적 포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처음에는 주로 도서에 적용되었지만, 여리해 동안에 걸쳐 범위가 확대되면서 연속간행물, 녹음자료, 멀티미디어 키트, 마이크로물, 비디오를 포함하게 되었고 1995년에는 오프라인자료로 확대되었다.

NLC는 1994년 6월부터 1995년 7월까지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캐나다 전자저널과 기타 출판물을 대상으로 수집, 편목, 보존 및 이용제공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인 EPPP(Electronic Publications Pilot Project)를 수행함으로써 온라인자료의 수집과 장기 관리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NLC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1996년에 최종보고서 (National Library of Canada 1996)가 출판된 이후에도 온라인자료로까지 법정 납본을 확대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들과 저작권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상당량의 온라인 자료를 자발적 납본 계약을 통해 수집하고 있다.

<표 1> 주요 국가의 디지털자료 납본 제도 현황

국가명	납본관련법령 (최근개정연도)	법정납본대상자료				웹아카이빙프로젝트		납본관련법개정 움직임
		인쇄 자료	시청 각자 료	오프 라인 자료	온라 인자 료	이름	성격	
한국	도서관및독서진흥법 (1994)	◎	◎	◎				
일본	국립국회도서관법(2000)	◎	◎	◎		WARP	인터넷자료의 선택적 축적	국립국회도서관장이 납본제도 심의회에 온라인자료의 법정 납본 문제 자문, 2004년 중 연구 완료 예정
영국	저작권법(1988)	◎	◎	v		Domain.uk	영국 웹사이트의 선택적 자동수집	모든 디지털자료의 법정납본을 규정한 법안 의회 상정. 2003년 중 입법화 노력 중
프랑스	납본법(1992)	◎	◎	◎			1999년 이후 선택적, 이벤트별 자동수집 실험. 2000년 6월 이후 .fr 도메인 자동수집	최근 BnF와 Ina에게 모든 프랑스 웹페이지 자동수집의 법적 권한 부여
독일	독일국립도서관법(1990)	◎	◎	◎				독일국립도서관과 출판사대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2000년 온라인자료 납본지침 보고서 제출
네덜란드	없음	v	v	v	v	NEDLIB	유럽 8개국공동사업	
노르웨이	납본법(1989)	◎	◎	◎	◎	Nordic Web Archive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과 공동 추진	
핀란드	납본법(1980)	◎	◎			Eva	인터넷 디지털자료의 수집, 등록, 보존 방법과 도구 개발	2003년 3월에 모든 디지털자료를 법정납본대상으로 확대하는 신 납본법 시행 예정
스웨덴	납본법(1995)	◎	◎	◎		Kulturarw 3	모든 출판된 스웨덴 온라인자료의 자동수집	2000년부터 온라인자료의 법정납본 논의 시작. 2002년 웹아카이빙을 법제화하는 특별 법령 공포
덴마크	출판물의 저작권납본에 관한 법률(1997)	◎	◎	◎	◎*			
호주	저작권법(1968)	◎		v		PANDORA	선택지침에 의한 선택적 온라인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2001년 말부터 시청각자료와 디지털자료의 법정납본을 위한 납본법 개정 검토중
남아프리카	납본법(1997)	◎	◎	◎	◎			
미국	저작권법(1989)	◎	◎	◎		MINERVA	이벤트중심 웹아카이빙실험	LC에게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의 다운로드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 요구
캐나다	국립도서관법(1985) 국립도서관납본법(1995)	◎	◎	◎	v	EPPP	전자저널중심의 인터넷출판물 수집, 편목, 보존 이용 실험	

◎는 법정 납본, v는 자발적 납본을 표시함. * 동적 온라인자료 제외.

4 국립디지털도서관의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정책 방향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립디지털도서관을 통해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디지털자료의 수집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서개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과 지침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디지털자료의 납본정책 역시 그러한 거시적 시각 속에서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법정납본 대상자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CDNL(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은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법률에는 가능한 한 납본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CDNL 1997). 현재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납본 대상 디지털자료의 범위를 모든 유형의 디지털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매체가 계속 생겨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일이 해당 매체를 열거하기보다는 노르웨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처럼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납본을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중하게 내린다면 수시로 법을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납본 정책을 기대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이 경우 수집 대상 자료의 유형과 포맷 수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인쇄매체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특히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관련해서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납본주체와 국가도서관간의 긴장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국립디지털도서관은 새로운 법을 통해 납본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납본의무자들은 디지털자료를 납본해야 할 의무와 함께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납본 제도가 한 나라의 출판유산을 지키는 효과적인 도구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문제, 특히 이용제공에 관련된 문제를 법 개정애 앞서 철저히 조사하고 이해당사자간의 논쟁과 설득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에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납본 대상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비용 문제가 따른다.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관련 연구 결과들은 전통적 매체에 비해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이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Muir and Oppenheim 2001). 그렇다고 납본 대상이 되는 전통적 매체의 출판량이 앞으로 상당기간 줄어들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납본 대상자료를 모든 형태의 디지털자료로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한 추가 자금 확충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 디지털도서관으로서 디지털자료 납본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추정하고 그에 따른 재원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련된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납본시스템 개발인력과 실행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이면서도 가장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인력수급계획에

서 이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모든 사항은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설립과 관련해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연구계획을 수립·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디지털자료 출판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면서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실험적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얻어진 지식과 경험이 디지털자료로까지 납본을 확대하는 법안과 정책안의 바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오늘날 각 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법정 납본 제도는 대부분 인쇄가 유일한 출판매체이거나 적어도 지배적 매체이던 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새로운 디지털매체의 개발, 전자출판의 출현, 그리고 출판도구로서 인터넷과 웹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국가도서관들은 납본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적응시켜야 할 전례 없는 최대의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각 국은 디지털자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록된 자료가 납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납본법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특히 온라인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실험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국가도서관이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환경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분간 디지털자료의 법정 납본에 대해서는 해답보다 의문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점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적 및 국가적 차원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인터넷 이용 국가이자 2008년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설립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현재로서는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형편이다.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자료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정 납본 제도의 확대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주도 하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험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제도적, 경제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자료의 납본제도 모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國立國會圖書館. 2002 [平成 14年]. 『國立國會圖書館年報』 平成 13年版.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국립중앙도서관. 2002. 『2001년도 국립중앙도서관연보』.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根本 彰. 1997. 電子出版物の納本制度を考える: 保存と利用の相克. 『現代の圖書館』, 35(3): 128-132.

- 納本制度審議會. 1999 [平成 11年]. 『答申 パッケージ系電子出版物の納入に係る代償金の額について』, [online], [cited 2001.11.20].
<http://www.ndl.go.jp/aboutus/data/s_toushin.pdf>.
- 納本制度審議會. 2000 [平成 12年]. 『答申 納入すべきパッケージ系電子出版物の「最良版」について』, [online], [cited 2001.11.20].
<http://www.ndl.go.jp/aboutus/data/s_toushin_2.pdf>.
- 納本制度調査會. 1998 [平成 10年]. 『中間答申 電子的な媒體の出版物の納入に関する制度及び運用の在り方について』, [東京]: 納本制度調査會.
- 納本制度調査會. 1999 [平成 11年]. 『答申 21世紀を展望した我が國の納本制度の在り方: 電子出版物を中心に』, [online], [cited 2001.11.20].
<http://www.ndl.go.jp/jp/aboutus/data/c_toushin.pdf>.
- 윤희운. 2001. 국가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수집 및 보존방안. 『도서관』 56(3): 3-48.
- 윤희운. 2002.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185-207.
- 田中嘉彦. 2000. 納本制度改革の動向: 國立國會圖書館の電子出版物への對應. 『情報の科學と技術』 50(4): 212-217.
- 芦田 淳. 2001. 電子出版物収集の制度化へ向けて: 蘭・獨・伊・仏・英 各國國立圖書館の取組み. 『國立國會圖書館月報』, 485: 12-16.
- Arvidson, Allan. 2002. "New Web-archiving Law in Sweden" [online]. [cited 2002.6.19]
<DIGITAL-PRESERVATION@JISCMAIL.AC.UK>.
- British Library. 1996. *Proposal for the Legal Deposit of Non-print Publications to the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from the British Library*. London: British Library.
- British Library. [2002]. *Extension of Legal Deposit to Non-print Materials*. [online]. [cited 2002.12.13]. <<http://www.bl.uk/news/webcase.html>>.
- Committee on an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y for the Library of Congress, *et al.* 2000. *LC21: a Digital Strategy for th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Working Group. 1997. *The Legal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Paris: Unesco.
- Conference of European National Librarians [and] Federation of European Publishers(CENL/FEP). 2002. *Statement on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Codes of Practice for the Voluntary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online]. [cited 2002.6.19]. <<http://www.bl.uk/gabriel/projects/pages/code-of-practice.html>>.
- Delsey, Tom. 1997. "The National Library's Role in Facilitating Scholarly Communications."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s* [online], 22(3/4): [cited 2001.12.13]. <<http://www.cjc-online.ca>>.
- Dupont, Henrik. 1999. "Legal Deposit in Denmark: the New Law and Electronic Product."

- LIBER Quarterly, the Journal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 [online], 9(2): [cited 2002.1.20]. <<http://www.kb.nl/infolev/liber/articles/dupont11.htm>>.
- Gatenby, Pam. 2002. "Legal Deposit, Electronic Publications and Digital Archiving: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s Experience." 68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Glasgow, August 18-24, 2002. [online]. [cited 2002.12.13]. <<http://www.ifla.org/IV/ifla68/papers/071-124e.pdf>>.
- Hakala, Juha. 1999. "Electronic Publications as Legal Deposit Copies." *Tietolinja News* [online], 1/1999: [cited 2001.11.21]. <<http://www.lib.helsinki.fi/tietolinja/0199/legaldep.html>>.
- Helsinki University Library. 2001. *Legal Deposits to Helsinki University Library*. [online]. [cited 2002.12.10]. <<http://www.lib.helsinki.fi/english/publishers/deposit/>>.
- IFLA. Committee on Copyright and Other Legal Matter(CLM). 2000. *The IFLA Position on Copyright in the Digital Environment*. [online]. [cited 2002.12.13]. <<http://www.ifla.org/III/clm/pl/pos-dig.htm>>.
- IFLA. Committee on Copyright and Other Legal Matter(CLM). 2002.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and Neighbouring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 International Library Perspective*. [online]. [cited on 2002.12.13]. <<http://www.ifla.org/III/clm/pl/ilp.htm>>.
- IFLA and IPA. 2002. *Preserving the Memory of the World in Perpetuity: a Joint Statement on the Archiving and Preserving of Digital Information*. [online]. [cited 2002.12.13]. <<http://www.ifla.org/V/press/ifla-ipa02.htm>>
- Jasion, Jan T. 1991. *The International Guide to Legal Deposit*. Aldershot: Ashgate.
- Kuny, Terry and Gary Cleveland. 1998. "The Digital Library: Myths and Challenges." *IFLA Journal*, 24(2): 56-71.
- Larivière, Jules. 2000.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Legislation*, revised, enlarged and updated edition of the 1981 publication by Dr. Jean Lunn. Paris: Unesco.
- Letshela, P. Z. and P. J. Lor. 2002. "Implementing Legal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in Africa: Progress Report from South Africa and Namibia." 68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Glasgow, August 18-24, 2002. [online]. [cited 2002.12.13]. <<http://www.ifla.org/IV/ifla68/papers/072-124e.pdf>>.
- Lonsdale, Ray and Chris Armstrong. 2001. "Electronic Books: Challenges for Academic Libraries." *Library Hi Tech*, 19(4): 332-339.
- Mackenzie Owen, J. S. and J.v.d. Walle. 1996. *Deposit Collections of Electronic Publications*.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Martin, Elizabeth. 1999. *Management of Networked Electronic Publications: a Table of*

- Status in Various Countries.* [online]. [cited 2001.11.20]. <<http://www.nlc-bnc.ca/obj/r7/f2/consult4-e.pdf>>.
- Muir, Adrienne. 2001. "Legal Deposit and Preservation of Digital Publications: a Review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y." *Journal of Documentation*, 57(5): 652-682.
- Muir, Adrienne and Charles Oppenheim. 2001. "Legal Deposit", in *Report on Developments World-Wide on National Information Policy* [online]. Loughborough, Dept. of Information Science, Loughborough University. [cited in 2002.7.21]. <http://www.la-hq.org.uk/directory/prof_issues/nip/>.
-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and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1996. *Submission to the Copyright Law Review Committee on Legal Deposit*. [online]. [cited 2002.12.13]. <<http://www.nla.gov.au/policy/clrcld.html>>.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2001a. *Deed for the Use of CD-ROMs and Other Electronic Materials Received by Voluntary Deposit*. [online]. [cited 2002.12.13]. <<http://www.nal.gov.au/policy/deed.html>>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2001b. *Policy on the Use of Australian CD-ROMs and Other Electronic Materials Acquired by Deposit*. [online]. [cited 2002.12.13]. <<http://www.nal.gov.au/policy/cdrom.html>>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2002a. *Guideline for the Selection of Online Australian Publications Intended for Preservation by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online]. [cited 2002.12.13]. <<http://pandora.nla.gov.au/selectionguidelines.html>>.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2002b. Voluntary Deposit Scheme for Physical Format Electronic Publications. [online]. [cited 2002.12.13]. <<http://www.nla.gov.au/policy/vdelec.html>>.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Legal Deposit*. [online]. [cited 2002.12.13]. <<http://www.nla.gov.au/padi/topics/67.html>>.
- National Library of Canada. Electronic Publications Pilot Project Team. 1996. *Electronic Publications Pilot Project (EPPP): Final Report*. Ottawa: National Library of Canada.
- Oppenheim, Charles. 1997. "The Legal Deposit of Non-Print Publications."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chnology* [online], 1997(3): [cited 2001.11.20]. <http://elj.warwick.ac.uk/jilt/legdep/97_3opp/>.
- Scott, Marianne. 2002. "Legal Deposit and Copyright: Some Issues of Concern." 68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Glasgow, Aug. 18-24, 2002. [online]. [cited 2002.12.13]. <<http://www.ifla.org/IV/ifla68/papers/139-124e.pdf>>.
- Seadle, Michael. 2001. "Copyright in the Networked World: Digital Legal Deposit." *Library Hi Tech*, 19(3): 299-303.
- Steenbakkens, J. 1999. "Developing the Depository of Netherlands Electronic Publications."

Alexandria, 11(2): 93-105.

U.K. Dept. of Culture, Media and Sport. 1998. *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Summary of Responses to the Consultation Paper Issued by the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the Scottish Office, the Welsh Office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Northern Ireland on 11 February 1997*. London: DCMS.

U.K. Dept. of National Heritage, *et al.* 1997. *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a Consultation Paper*. DNHJ0198NJ. London: DNH.

U.S. Copyright Office. 1999. *Copyright Registration for Online Works*. Circular 66.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U.S. Copyright Office. 2002a. 'Best Edition' of Published Copyrighted Works for the Collections of the Library of Congress. Circular 7b.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U.S. Copyright Office. 2002b. *Mandatory Deposit of Copies or Phonorecords for the Library of Congress*. Circular 7d.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Waters, D. and J. Garrett, eds. 1996. *Preserving Digital Information: Report of the Task Force on Archiving of Digital Information*. Washington, D.C.: The Commission on Preservation and Access; Research Libraries Group.

Werf, Tibia van der. 2002. "Experience of the National Library of the Netherlands" in *The State of Digital Preservatio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onference Proceedings: Documentation Abstracts, Inc. Institute for Information Science, Washington, D.C., April 24-25, 2002*. Washington, D.C.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54-64.

Working Party on Legal Deposit. 1998. *Report*. [online]. [cited 2001.11.20]. <<http://www.bl.uk/about/policies/workreplegdep.html>>.

Working Party on Legal Deposit. 1999. *Code of Practice for the Voluntary Deposit of Non-print Publications* [online]. Revised version. [cited 2001.11.20]. <<http://www.nls.uk/professional/legaldeposit/nonprint/code.html>>.